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명숙 의원)

의안 번호	21-139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11. .

발의자: 강명숙, 권영숙, 김기석, 김성희,
김종선, 김진천, 이민석, 장덕준,
정혜경, 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폐업
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피해지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
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근거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(안 제1조)
- 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
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(안 제8조의2)
- 다.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규정 마련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4. 조 례 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1. 11. 19. ~ 2021. 11. 24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,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소상공인 단체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

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3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소상공인"이란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2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"소상공인"이란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</p> <p>2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의2(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</p>	<p>제8조의2(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<신설>

제9조 (생략)

제10조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,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

3. (현행 2호와 같음)

제9조(소상공인 단체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·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1. 재창업 지원
 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 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8조의2 제2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,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
- 제9조②항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추계가 예상하기 어렵고,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이창민
연 락 처	02-3153-8575